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39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 기능인력(E-7-3) 금형원 도입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외 양성 대학 지정, 기량검증 및 부처 고용추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 양성대학 지정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나. 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 및 취업지원 절차 마련(안 제38조의3)

다.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 변경제도(‘23년) 반영 및 서식 정비
(안 제3조 내지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의견제출)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044-203-4907, ja338@korea.kr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u>외국인유학 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 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외국인유학 생, 외국인교육생</u> ----- ----- <u>외국인 기능인력</u>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u>양성대학</u> “(이하 “양성대학”이 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중 <u>국가뿌리산업진 흥센터가</u> 선정한 뿌리산업 외 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국내 양성대학</u> “(이하 “국내 양 성대학”----- ----- ----- <u>산업통상부장관</u> <u>의</u> ----- -----. 4의2. “ <u>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 력 국외 양성대학</u> ”(이하 “ <u>국외 양성대학</u> ”이라 한다)이라 함 은 <u>관리기관의 장이</u> 지정한 <u>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해외 교육기관을</u> 말한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의 E-9(비전문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 D-2(유학)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7.·8. (생략)

9. “기량검증”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이 숙련

다.

5. -----

----- 별표 1의2 -----

--.

6. -----

-- 별표 1의2 -----
-----.

6의2. “외국인교육생”이라 함은
국외 양성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을 말한다.

6의3. “외국인 기능인력”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18
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23조 및 별표 1의2의
E-7(특정 활동) 체류자격 외
국인을 말한다.

7.·8. (현행과 같음)

9.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교육생이 외국

기능인력으로 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량검증신청자”라 함은 <u>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u> 중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량검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1. · 12. (생략) 13. “고용추천서”라 함은 법무부 <u>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가점항목 중 「관련 중앙부처 추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뿌리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추천서를 말한다.</u> 제2장 <u>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u> 제3조(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신청자격) <u>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한다.</u>	<u>인 기능인력</u>----- -----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8조의3 ----- -----. 10. ----- <u>외국인유학생, 외국인교육생</u> ----- -----. 11.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2장 <u>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u> <u><삭 제></u>
--	---

제4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삭 제>

①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

3. 재직증명서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6.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서류심사)

<삭 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지식

2.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삭 제>

제7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현장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삭 제>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
의 적정성

2. 숙련기능 보유 여부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
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
접·현장평가의 장소) 관리기관
의 장은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기업에
서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최
종결과의 통보) 관리기관의 장
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
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
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확
인서 발급) 관리기관의 장은 기
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4
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
를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

제11조(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① 산업통상부장관-----

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고용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2조(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①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2.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 D-10(구직)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② (생략)

제13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관
련하여 -----
-----.

<삭 제>

제12조(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① -----

-----.

1. 국내 양성대학-----

2. 국내 양성대학-----

-- 별표 1의2-----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 -- <u>등 국내</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 ① (생략)	제14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유학생의 <u>양성대학</u>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	2. ----- <u>국내 양성대학</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제4장</u>	<u><삭 제></u>
<u>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제도 공통운영 사항</u>	
제22조(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생략)	제22조(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u>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u> 은 해당 기량검증을 다시 신청하여	② ----- ----- <u>외국인유학생</u> ----- -----

야 한다.	-----.
제24조(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 ----- -- <u>산업통상부장관</u> ----- -----.
제5장 <u>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u>	제5장 <u>국내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u>
제26조(<u>양성대학의 신청자격</u>) (생략)	제26조(<u>국내 양성대학의 신청자격</u>) (현행과 같음)
제27조(<u>양성대학 신청서제출</u>) ① 신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양성대학</u> 선정의 필요성 2. ~ 5. (생략) ② 그 밖에 <u>양성대학</u> 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7조(<u>국내 양성대학 신청서제출</u>) ① ----- -----. 1. <u>국내 양성대학</u> ----- 2. ~ 5. (현행과 같음) ② ----- <u>국내 양성대학</u> ----- ----- <u>산업통상부장관</u> ----- -----.
제28조(<u>양성대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u>) ① 관리기관의 장은 <u>양성대학</u>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8조(<u>국내 양성대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u>) ① ----- <u>국내 양성대학</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u>양성대학의 선정</u>)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뿌리산업 기	제29조(<u>국내 양성대학의 선정</u>) ① <u>산업통상부장관</u> -----

술인력으로 외국인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u>따른</u> 양성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u>양성대학</u>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외국인유학생 모집 및 관리 등을 <u>위한</u> 양성대학 내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계획 3. (생략) 4. 그 밖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u>양성대학 선정결과의 보고 및 통보</u>) ① 관리기관의 장은 <u>양성대학</u> 선정 결과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u>양성대학</u> 선정 결과를 신청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u>양성대학 협약</u>) 관리기관의 장은 <u>양성대학</u>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대학이 제27조제1항	----- ----- ----- <u>따른 국내</u> ----- -----. ② ----- <u>국내 양성대학</u>----- -----. 1. (현행과 같음) 2. ----- -- <u>위한 국내</u> ----- ----- 3. (현행과 같음) 4. ----- <u>산업통상부장관</u>----- ----- 제30조(<u>국내 양성대학 선정결과의 보고 및 통보</u>) ① ----- <u>국내 양성대학</u> ----- <u>산업통상부장관</u>----- ---. ② ----- <u>국내 양성대학</u> ----- -----. 제31조(<u>국내 양성대학 협약</u>) ----- ----- <u>국내 양성대학</u>----- -----
--	--

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양성대학의 연차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에 대해 제31조에 따른 사항 등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3조(양성대학의 연차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양성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32조에 따라 연차평가를 받은 양성대학은 평가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36조(양성대학의 선정취소) 산

-----.

제32조(국내 양성대학의 연차평가) ① ----- 국내 양성대학-----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국내 양성대학의 연차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
----- 국내 양성대학 -----
--- 산업통상부장관-----
-----.

② ----- 국내 양성대학 ----- 국내 양성대학 -----
-----.

제34조(국내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 국내 양성대학-----

-----.
-----.

제36조(국내 양성대학의 선정취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2.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생략)
4. 그 밖에 양성대학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 ① 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그 밖에 양성대학을 체계적

소) 산업통상부장관-----

--- 선정된 국내 -----

1. -----

국내 양성대학-----

2. 국내 양성대학 -----

3. (현행과 같음)

4. ----- 국내 양성대학-----

제37조(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 ① 국내 양성대학-----

② -----

1. 2. (현행과 같음)

3. ----- 국내 양성대학-----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38조(양성대학의 지원) 정부는
양성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뿌
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
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6장 보칙

<신설>

<신설>

제38조(국내 양성대학의 지원) --
국내 양성대학-----

-----.

1. ~ 4. (현행과 같음)

제6장 외국인 기능인력의 도입

제38조의2(국외 양성대학 지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의
기능인력 양성 및 유입 촉진
을 위하여 제2조제4의2호에 따
른 국외 양성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제개발
협력기본법」에 따른 뿌리기술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외
국인교육생의 뿌리기술 교육 등
국외 양성대학의 학사과정을 지
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외국인교육생 기량검

증 및 취업지원) ① 국내 뿌리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국외

<신 설>

양성대학의 외국인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 신청서

2. 해당 국가의 여권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국외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 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3장을 준용하여 외국인교육생의 기량검증을 실시하고, 기량검증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교육생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의 채용 정보 제공 및 취업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4(외국인 기능인력 고용 추천)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외

양성대학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
내 뿌리기업으로 취업이 결정된
외국인교육생 중 법무부 매뉴얼
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고용추천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39조(설명회 및 간담회) 관리기

관의 장은 뿌리산업 숙련기능인
력으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
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2.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3.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
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40조(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
리산업의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
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
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제40조(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다.	--.
제41조(적용범위) <u>뿌리산업 숙련</u> <u>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u> <u>외국인유학생을</u> 양성·활용하 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1조(적용범위) ----- <u>외국인</u> <u>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u> <u>외국인유학생·외국인교육생</u> -- ----- ----- -----.
제42조(업무의 위임 등) <u>산업통상</u> <u>자원부장관</u> 은 본 지침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업무의 위임 등) <u>산업통상</u> <u>부장관</u> ----- ----- -----.
제43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자원</u> <u>부장관</u> 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 8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부장</u> <u>관</u> 은 「 <u>훈령·예규 등의 발령</u> <u>및 관리에 관한 규정</u> 」에 따라 ----- ----- ----- -----.